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50%를 지원 받아 2014. 7. 14. 광주광역시 서구 ○○로 ○○○(○동)에 있는 (주)○○○○○○○ (대표자 ○○○)와 3개사¹⁾와 ‘○○○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2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15,743,320,000원²⁾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7. 21. 착공하여 2018. 12. 3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0032호, 2010. 2. 4.)」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

1) 전라남도 ○○군 ○○면 ○○로 000 ○○○○건설(주) 대표자 ○○○, 경상북도 ○○군 ○○읍 ○○○길 00-0에 있는 ○○건설(주) 대표자 ○○○, 전라북도 ○○시 ○○구 ○○○0길 0-0(○동) (유)○○○ ○건설 대표자 ○○○

2) 2017. 6. 1. 총 공사부기금액 15,906,163,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1. 23.)」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2011. 5. 11. ○○○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서 도로사면 녹화 및 유공포장을 설치하여 비점오염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교~○○시계간 도로확장공사(2공구)’의 설계서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내용대로 도로사면 녹화 및 유공포장을 설치하도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측점 3+083와 측점 3+133 2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그대로 시공할 예정으로 있어 공사비 132,731,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불필요하게 반영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132,731,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